

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개정이유

-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의 확대 조정을 통한 남·녀 평등의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한편,
- 현행 공무원 복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공무원의 복리를 증진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경조사(사망 및 탈상)특별휴가 대상 확대함.(안 제23조 제1항 별표3)
- 경조사 특별휴가시 휴가기간중 공·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(안 제24조)
- 여성보건휴가 대상을 매 생리기에서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매월 1일로 확대함.(안 제23조 제3항)
-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 신설함.
(안 제23조 제4항)
-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실시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하고,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재직 기간중으로 명시함.(안 제23조 제7항)

- 조기퇴직 경력직공무원 및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하는 고용직 공무원에게도 퇴직준비 휴가 부여(안 제24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.

지방공무원법

제59조 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의 개선과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 및 장기재직 휴가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여성공무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서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됨